

관세법 기본이론 교재 정오표 2025.07.17.

1. p33 4. 과세물건 확정시 시기(법 제16조) - 오타정정

| 수정전 | 수정후 |
|--|--|
| (9) 도난물품 또는 분실물품 : 해당 물품이 도난 되거나 분실될 때 | (9) 도난물품 또는 분실물품 : 해당 물품이 도난 되거나 분실된 때 |

2. p34 5. 적용 법령과 과세환율(법 제17, 제8조) - 오타정정

| 수정전 | 수정후 |
|---|---|
| (2) 과세환율 [법 제18조]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할 때에는 법 제17조(적용 법령)에 따른 날(보세건설자에 반입된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한 날을 말한다)이 속하는 주의 전주(前週)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그 율을 정한다. | (2) 과세환율 [법 제18조]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할 때에는 법 제17조(적용 법령)에 따른 날(보세건설장에 반입된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한 날을 말한다)이 속하는 주의 전주(前週)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그 율을 정한다. |

3. p36 2) 특별납세의무자(법 제19조 제1항) - 굵은글씨

| 수정전 | 수정후 |
|---|---|
| ① 외국물품인 선박용품, 항공기용품, 차량용품, 국제무역선·국제무역기·국경출입차량 안에서 판매할 물품이 하역허가의 내용대로 운송수단에 적재되지 아니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인 경우 : 하역허가를 받은 자 | ① 외국물품인 선박용품, 항공기용품, 차량용품, 국제무역선·국제무역기·국경출입차량 안에서 판매할 물품이 하역허가의 내용대로 운송수단에 적재되지 아니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인 경우 : 하역허가를 받은 자 |

4. p148 (6) 자료제출 - 오타정정

| 수정전 | 수정후 |
|---|---|
| ② 덤프물품의 수입사실과 해당 물품의 수입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에 관한 충분한 증빙자료 3부 | ② 덤프물품의 수입사실과 해당 물품의 수입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에 관한 충분한 증빙자료 3부 |

5. p158 (1) 원칙적인 부과방법 √ 핵심체크 - 오타정정

| 수정전 | 수정후 |
|--|--|
| ① 덤프방지관세를 정률세의 방법으로 부과하는 경우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덤프률의 범위 안에서 결정한 율을 과세가격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| ① 덤프방지관세를 정률세의 방법으로 부과하는 경우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덤프률의 범위 안에서 결정한 율을 과세가격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|

6. p159 (2)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공급자에 대한 부과방법 - 제목삭제

| 수정전 | 수정후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(2)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공급자에 대한 부과방법 | (2)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공급자에 대한 부과방법 |

7. p159 (3) 신규공급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방법 - 제목수정

| 수정전 | 수정후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(3) 신규공급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방법 | (2) 조사대상 미선정 공급자 및 신규 공급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방법 |

8. p188 (1) 원칙적인 부과방법 - 띄어쓰기 및 오타정정

| 수정전 | 수정후 |
|---|---|
| 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상계관세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보조금률의 범위 안에서 결정한 율을 과세가격에 곱하여 산출한다. | 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상계관세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보조금률 의 범위 안에서 결정한 율 을 과세가격에 곱하여 산출한다. |

9. p252 1. 정부용품 등의 면세 대상(법 제92조) - 오타정정

| 수정전 | 수정후 |
|---|---|
| ⑦ 국가나 지방자치단체(이들이 설립하였거나 출연 또는 출자할 법인을 포함하다)가 환경오염(소음 및 진동을 포함한다)을 측정하거나 분석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기계·기구 등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| ⑦ 국가나 지방자치단체(이들이 설립하였거나 출연 또는 출자한 법인을 포함한다)가 환경오염(소음 및 진동을 포함한다)을 측정하거나 분석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기계·기구 등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|

10. p262 3. 손상물품에 대한 감면 신청(시행규칙 제55조) - 오타정정

| 수정전 | 수정후 |
|--|---|
| 상기 1. ①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경감받고자 하는 자는 영 제112조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의 사항을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한다. | 상기 1. (1)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경감받고자 하는 자는 영 제112조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의 사항을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한다. |

11. p341 (1) 감치대상(법 제116조의4 제1항) - 오타정정

| 수정전 | 수정후 |
|--|---|
|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체납자가 다음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체납된 관세(세관장이 부과·징수하는 내국세 등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가 납부될 때까지 그 체납자를 감치(監置)에 처할 수 있다. |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체납자가 다음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체납된 관세(세관장이 부과·징수하는 내국세 등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가 납부될 때까지 그 체납자를 감치(監置)에 처할 수 있다. |

